

의안번호	제 282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범기 의원 외 7인
발의연월일	2008년 10월 20일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
----------	-----

발의연월일 : 2008년 10월 20일
 발 의 자 : 김법기, 이영복, 최광옥,
 강태원, 권광택, 이규완,
 이필용, 최미애

1. 제안이유

- 현재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사항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실국소관 출자·출연기관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모두 명기함으로써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별 소관 출자·출연기관 추가 명기(안 제3조제2항)
 - 행정소방위원회 : 충북인재양성재단
 - 교육사회위원회 : 충북학사
 - 산업경제위원회 :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 건설문화위원회 :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 용어 정비
 -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함(안 제1조와 제12조의2 제2항 및 제3항)
 - “잔임 기간”을 “남은 임기”로 함(안 제5조제2항)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발취 : 별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와 제12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소관에”를 “운영에”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3호나목과 동조동항제4호나목 중 “운영에 관한”을 “소관에 속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4호에 다목 내지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제5호에 나목 내지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중 “잔임 기간으로”를 “남은 임기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u>규정에 의하여</u> 충청북도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u>규정에 따라</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생략)</p> <p>② 상임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행정소방위원회 가.~나. (생략) 다. <u>충북개발연구원 소관에 관한 사항</u> <u><신설></u></p> <p>3. 교육사회위원회 가. (생략) 나. <u>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u> 다. (생략) <u><신설></u></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행정소방위원회 가.~나. (현행과 같음) 다.<u>운영에</u>..... <u>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u></p> <p>3. 교육사회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u>소관에 속하는</u> </p> <p>다. (현행과 같음) <u>라.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4. 산업경제위원회 가. (생략) 나. 농업기술원 <u>운영에 관한 사항</u> <u><신설></u> <u><신설></u> <u><신설></u> <u><신설></u></p>	<p>4. 산업경제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 <u>소관에 속하는 ……</u> 다. <u>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u> <u>운영에 관한 사항</u> 라. <u>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u> 마. <u>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u> <u>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 바. <u>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u> <u>관한 사항</u></p>
<p>5. 건설문화위원회 가. (생략) <u><신설></u> <u><신설></u> <u><신설></u></p>	<p>5. 건설문화위원회 가. (현행과 같음) 나. <u>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u> <u>관한 사항</u> 다. <u>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u> <u>관한 사항</u> 라. <u>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u> <u>관한 사항</u></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생략) ② 보임 또는 개선(改選)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u>잔임 기간으로 한다.</u></p>	<p>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남은 임기로 …….</u></p>

현행	개정안
<p>제12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p> <p>① (생략)</p> <p>② 위원회가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 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u>규정에 의하여</u> 위촉될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2조의2(위원회의 전문가 활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규정에 따라</u></p> <p>③ <u>규정에 따라</u></p> <p>④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취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및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제3조(세부분장사무) 의회사무처, 본청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하부조직에 대한 세부 분장사무는 별표 6과 같다.

[별표6] 사 무 분 장 표

【정책관리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정 책 기 획 관	31. 충북개발연구원 지원·육성 및 정책자문에 관한 사항 50. 충북인재양성재단 지도감독
예 산 담 당 관	59. 충북개발공사 운영 지도

【경제통상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전략산업과	16. (재)지식산업진흥원 운영 관리 49. 충북테크노파크 운영관리
기업지원과	7.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 감독 39. 충북신용보증재단 지도관리

【균형발전국】

부서명	분장사무
바이오사업과	2.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관리
교통물류과	35. 교통연수원 관리 및 운수종사자 교육관련 업무

【보건복지여성국】

부서명	분장사무
복지정책과	54. 충북학사 및 청람재 운영 관리
보건위생과	5. 의료원 관리에 관한 업무

【문화관광환경국】

부서명	분장사무
문화예술과	60. 문화재담당 소관 법인 및 단체 지도 감독